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401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상정	소위 심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42	박수현의원 등 11인	'25.9.1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2.24.)
	2215803	박정하의원 등 10인	'25.12.31.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2.24.)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현재 관광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수준이 미흡하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8).

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 평

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를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연구개발·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신설>

4.·5. (현행과 같음)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
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보조
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
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보조
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보조
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